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1
----------	-------

발의년월일 : 2021. 8. 13.
발의자 : 나정숙 의원 외 12명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2019.12.25.)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던 여성·아동업무가 여성보육과와 아동권리과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여성폭력에 특화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여 부서 간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관계법령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추가(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여성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규정(안 제2조)
- 지역연대 존속기한 신설(안 제7조)
- “아동·여성” 을 “여성” 으로 변경
(안 제3조~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제18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현행조례 : 붙임 3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4
7. 예산수반사항 : 붙임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9. 부서 검토의견 : 붙임6(여성보육과), 붙임7(아동권리과)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여성”을 각각 “여성”으로 한다.

제4조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을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동·여성”을 각각 “여성”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여성”을 “여성”로 한다.

제12조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동·여성”을 각각 “여성”으로 한다.

제16조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17조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제18조 중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3)

【불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

2.“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 여성-----

② ----- 여성-----

-----.

③ ----- 여성-----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 여성 -----

-- 여성 -----

-----.
-----.

제2장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여성 -----

----- 여성 -----

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 ----- -----.
1. <u>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u>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 여성 ----- ----- ---
2. <u>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u>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 ----- ----- ---
3. 위기 <u>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u> 에 관한 사항	3. --- 여성----- -----
4. 지역 내 <u>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u> 에 관한 사항	4. ----- 여성 ----- -----
5. <u>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u> 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여성-----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위원은 <u>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u>업무담당국장</u>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여성 ----- ----- ----- ----- ----- ----- 업무담당 실·국장-----

1. (생 략)

2. 아동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 6. (생 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 신 설 >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 여성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2조(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 · 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아동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시책 추진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 ·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 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1. (현행과 같음)

2. 여성-----

3. ~ 6.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연대의 존속기한은 2026년 6 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

-- 여성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례협의회의 업무) -----
----- 여성 -----

-----.

제3장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시책 추진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여성-----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여성 -----

2. 여성 -----

3. 여성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비의 지원) ----- 여성 -----

-----.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 여성 -----

-----.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

- 여성 -----

---.

【붙임3】 현행 조례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 폭력” 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삭제 2014. 11. 25.>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례협의회 회부사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안산시의회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5.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2조(사례협의회의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사례협의회 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4. 11. 25.>

- ①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